

선임계리사 임면 보고(또는 신고)

문서번호 20 . . 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(담당 부서장)

제 목 선임계리사 임면 보고(또는 신고)

「보험업법」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20 . . 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선임계리사를 선임(또는 해임)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선임계리사 선임(또는 해임) 내용 1부.
2. 선임계리사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○ ○ ○ ○ 대표이사 (인)

작성 자 :	(직 위)
전화번호 :	

(붙임 1)

선임계리사 선임(또는 해임) 내용

1. 선임계리사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범 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 력 및 자격 ¹⁾	자격요 건 확인결 과

주 1) 주요 경력 및 자격란에는 법 제18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하
고, 보험계리사 자격등록번호 및 취득일을 연월 단위로 기재

2. 선임계리사 해임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임(예정) 일	해임사유 ¹⁾	비고 ²⁾

주 1)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2) 향후 선임계리사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선임계리사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직위	심사결과	비고
심사항목			
1.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			
2.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.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			
3.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(경고·문책만 해당한다) 및 제3호,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			
4. 법 제18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			
5. 법 제184조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을 준수할 것			
종합의견			
년 월 일			
○○금융회사 선임계리사 ○○○ (인)			
○○금융회사 대표이사 ○○○ (인)			

[첨부서류]

1. 등록된 보험계리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보험계리사 자격증 사본 등)
2.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3.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(경고·문책만 해당한다) 및 제3호,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, 내규 또는 조직도 등)
5. 법 제184조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, 내규 또는 조직도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있거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